##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11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김소희·조경태·최수진

이종배 • 김상훈 • 성일종

서범수 · 이헌승 · 인요한

엄태영 · 김승수 · 우재준

박형수 · 김미애 · 안상훈

김기웅 · 김선교 · 이달희

백종헌 · 김예지 의원

(2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 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연구개발 업무 등 적용의 제외)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관리자),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63조의2(연구개발 업무 등 적
	용의 제외) 이 장에서 정한 근
	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
	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u>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u>
	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
	<u>류 1(관리자), 대분류 2(전문</u>
	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 종사자) 직업에 종사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
	을 받는 사람